

(재)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9. 8) 상정
- 제11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9. 8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 인 용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(2004. 8. 9, 조례 제 2033호)으로 (재)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이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 이사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함.
(안 제9조제2항제2호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해당없음	<input type="radio"/> 해당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(재)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

의안 번호	제281호
의결 년월일	2004. 9. 9. (제114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8. 2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사유
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(2004. 8. 9, 조례 제 2033호) 으로 (재)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당연직이사인 부천시의 회 행정복지위 원회위원장이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□ 동의요구 내용

-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중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을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함.(안 제9조제2항제2호)

□ 관련규정

-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6조(정관)제2항 및 제8조(이사회의 구성)제2항
-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 제9조(이사)제2항 및 제34조(정관의 변경)

부천문화재단 정관 제 호

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변경안

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

부 칙

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변 경 안
<p>제9조(이사)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이사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9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조례(정관)발취 요약

○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- 제9조(경제문화국에 두는 과) 제1항
 - 경제문화국에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지식산업과, 문화예술과를 둔다.

○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

- 제6조(정관) 제2항
 -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음.
- 제8조(이사회 구성) 제2항제2호
 -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위원회위원장 <개정 2004.08.09>

○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정관

- 제9조(이사) 제2항제2호
 -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
- 제34조(정관의 변경)
 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음.